특허청 공고 제2022-235호

2022년 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3차) 공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2022년도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특허청장

1. 사업 개요

□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 지식재산 가치평가 :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원칙과 방법론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통하여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으로 표현하는 것

□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검토 등 그 가치를 평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지식재산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 결과 제공

2. 모집 개요

□ 모집대상 : **중소기업 또는 개인**

ㅇ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

ㅇ 사업 신청자는 발명의 **평가기관과 충분한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평가용도 : 5개 중 택1(필수)

ㅇ 사업화를 위한 ①**기술거래**, ②**사업타당성 검토**, ③**현물출자**, ④**마케팅홍보**, ⑤**국내외 기술인증**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접수기간 : 2022. 9. 5(월) ~ 2022. 9. 15(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www.kipa.org 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회원가입(로그인) -> 지원사업 -> 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Click -> 사업신청(온라인)**

□ 제출서류 : 신청서(온라인 작성) 및 지식재산평가 활용계획서 등(작성·발급 후 제출)

* **견적서는 발명의 평가기관이 발급한 견적서[별첨1-2]만 인정**

구 분	제 출 서 류
신청 시 제공 양식	1. 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 활용계획서 / 2.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 3.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입·이용·제공 동의서 4. 지식재산 평가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증빙용 서류	1. 지식재산권 등록원부**(*열람용 제출불가,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2.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주민등록등본 *** 주민번호 뒷자리 미기재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3.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최소 6개월 이상분)**

□ 지원한도 :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최대 60% 지원 (기본 50% + 우대지원율**(아래 우대율 참고) **최대 10% = 최대 60% 지원)**

* 발명의 평가기관 :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특허청장이 지정 및 고시한 평가기관

< 기본 지원율(최대 50%) >

구분	평가 비용	지원 금액
지식재산 가치평가	평가견적서에 의함	■ 평가 비용의 50% 이내를 국고보조금 지원 * 평가비용(용역 대금 중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청인 부담

< 우대 지원율(최대 10%p) >

* 항목별 적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 지원율에 최대 10%p 가산한 지원율이 적용되며, 해당 **적격 증빙 제출 필수**(미제출 시 미적용) (☞***공고문 6쪽 참고***)

구분	내용	우대율
2030 청년 또는 청년기업	만17세~39세(1983년생~2005년생)인 청년 및 기업 대표	10%p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특허청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	5%p
이노비즈기업	이노비즈 확인서 보유 기업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기업	1년내 특허청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	
녹색기술 인증기업	녹색성장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	
국가유공자	모든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기업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기업 또는 장애인	장애인기업법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장애인	
여성기업 또는 여성	여성기업법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여성	
초기창업(3년이내)기업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	
우수IP 보유 BIG3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관련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	
비수도권 지역소재 기업	소재지(본점)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인 기업	

(적용 예시) ① 벤처기업인 경우 5%p(총 55% 지원), ② 벤처기업이면서 초기창업기업인 경우 10%p(총 60% 지원), ③ 청년기업이면서 벤처기업인 경우 10%p(총 60% 지원)

□ 지원내용 : 발명의 평가기관을 통한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제공

○ 「지식재산평가보고서」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한 평가 결과를 포함하는 보고서

* 지식재산평가 보고서란 :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한 평가 결과를 포함하는 보고서

3. 지원 절차

4. 심사 기준

□ 심사기준

심의항목	세부항목		1차 서류	2차 발표
기술성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30	10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		10	10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		10	10
활용성	활용계획의 타당성	구체성 및 타당성	30	15
	신청자의 사업화 추진 여건	역량 및 활용 의지	10	15
	상용화 가능성	상용화 및 시장진입 가능성	10	10
1차 결과	1차 심의 결과 점수 환산		-	30
가점	가점 항목별 인정 여부 확인		-	10

* 2차 심의(발표평가) 일정 및 절차는 별도 안내 예정

□ 가점항목

○ 최근 3년('19. 1. 1 이후) 이내의 기간에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지식재산**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10점 한도 내에서 가점 부여

* **2차 심의 대상자 중 해당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 (별도 안내 예정)**

No	가점	가점 항목
1	5점	○ 표준특허 (국제표준화기구 등 인증을 받은 특허)
2	5점	○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개인 또는 기업
3	2점	○ 특허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
4	2점	○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또는 여성인 경우 * 중소기업일 경우 '우대 지원율'과 동일 조건으로 충족되어야 함
5	2점	○ 특허청이 주최하는 발명 관련 행사에서 수상한 개인 또는 기업
6	2점	○ 특허청이 주최하는 지원사업의 수혜기술 또는 기업
7	2점	○ 창업 3년 이내인 기업
8	2점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탁월판정 기업
9	2점	○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5. 유의사항

□ **유의사항**

o 구비서류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온라인 신청 전 **“사업화연계 활용계획서”**와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 등을 작성하고 모든 서류 구비 후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o 신청자 자격사항은 신청한 특허·실용신안권의 최종권리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명의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 : 신청자가 법인대표라도 개인명의 권리인 경우, 개인자격으로 신청해야 함)

o 신청자는 1차 심사 통과 이후에는 평가기관 변경이 불가합니다.

o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IP금융연계(IP보증·담보대출·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은 가능합니다.

o 작성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되거나, 타 유사 정부지원사업 중복선정의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시 해당 사업 지원취소와 함께, 국고보조금 규정에 따라 환수 및 형사고발 조치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신청자와 신청권리의 최종권리자가 서로 다르거나 사업 절차 도중 신청권리의 권리자가 변경될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기술거래를 희망하는 경우 협약된 기술거래기관에 귀사의 기본정보 및 지식재산 평가결과가 제공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최종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미체결** 또는 **자기부담 미완납** 또는 **중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선정 취소 및 동 사업 및 특허청의 각종 지원사업에 2년 이내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사업 안내

※ 문의처 ※

o 사업 운영 및 관리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실 : 02-3459-2935

참고자료 1

〈 발명의 평가기관 현황 〉

평가기관	연락처	비고
기술보증기금	02-2155-3753	**① 기술거래** **② 사업타당성 검토** **③ 현물출자** **④ 마케팅홍보** 지식재산권에 대해 사업성, 시장성, 권리성, 기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신용보증기금	053-430-4378	
나이스평가정보㈜	02-2124-6822	
나이스디앤비㈜	02-2122-1336	
윕스㈜	02-3153-7920	
유미특허법인	02-3458-0716	
이크레더블㈜	02-2101-9243	
주원아이피㈜	070-4335-8407	
케이티지㈜	070-7805-1618	
특허법인 다나	02-6957-9931	
특허법인 다래	02-3475-7774	
특허법인 도담	031-605-413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2-3299-6099	
한국농업기술진흥원	063-919-1343	
한국평가데이터㈜	02-3215-2384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3415-8854	**⑤ 기술인증** 성능평가·시험분석 등이 요구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권리성, 기술성을 평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7575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2164-0167	

* 발명의 평가기관 총 23개 중 18개 평가기관만 사업화연계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한국발명진흥회는 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 지원사업의 평가기관으로 선택 불가

참고자료 2

〈 우대지원율 사전 안내 〉

□ **우대 지원율 사유별 적격 증빙** (최종선정자 중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개인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필히 주민번호 미기재용으로 발급 후 제출

구 분	적격 증빙
2030 청년 또는 청년기업	■ **개인**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용,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기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기관 : 법원) - '임원에 관한 사항' 상 **대표이사의 출생년도가 1983년 이후 2005년 이내**일 것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충족할 것)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말소사항 포함**된 제출용 발급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 **지식재산공제 가입증서**(발급기관 : 기술보증기금) - 공제상품별 청약일자가 **2년 이내**일 것 -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ipmas.or.kr)에서 가입증서 출력
벤처기업	■ **벤처확인서 사본**(발급기관 : 벤처기업협회) -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일 것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smes.go.kr/venturein)에서 확인서 출력
이노비즈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이노비즈확인서 사본**(발급기관 : 이노비즈협회) -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발급일로부터 3년)일 것 - 이노비즈넷(innobiz.or.kr)에서 확인서 출력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기업	■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확인서**(발급기관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2021년 이후**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신청 확인서 (* 사업명, 과제 유형, 과제명, 신청일자 및 선정 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는 소관기관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만 인정)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센터 담당자에 문의
녹색기술 인증기업	■ **녹색기술 인증서**(발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인증서 **유효기간 이내**(인증일로부터 6년)일 것 - 녹색인증 홈페이지(greencertif.or.kr)에서 확인서 출력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확인서**(발급기관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또는 기업 대표 모두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일 것 (*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충족할 것) - 정부24 홈페이지(gov.kr)에서 신청 및 발급
장애인 기업 또는 장애인	■ **기업** : **장애인기업확인서**(발급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서 출력 ■ **개인**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용,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여성기업 또는 여성	■ **기업** : **여성기업확인서**(발급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서 출력 ■ **개인**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용,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초기창업 (3년이내) 기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기관 : 법원) - '회사성립연월일'이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말소사항 포함**된 제출용 발급
우수IP 보유 BIG3 기업	■ **BIG3 기업 지원확인서** - 2020년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BIG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지원 확인서 (* 사업명, 과제 유형, 과제명, 신청일자 및 선정 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는 소관기관 직인 날인된 확인서만 인정 또한 **내용상(사업명·세부과제명 등) BIG3 분야에 해당함을 표시**) - 각 지원사업 담당자에 문의
비수도권 지역소재 기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발급기관 : 세무서) -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발급

[참고용] 온라인 신청 시 기재 내용(아래 양식 작성 불필요)

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신청서

STEP1					
최종권리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자격사항 (신청인 자격사항)	☐ 개인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권리자 기업정보 (법인일 경우 기재)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지역(기업 소재지)		
	주소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 / 개인은 등본 상의 거주지*			
신청 지식재산	최종권리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명				
	권리종류	☐ 특허 ☐ 실용신안			
	국내등록번호	( ) - ( )			
	특허료만료일				
	발명의 명칭				
	평가항목	☐ 평가용도 (택1) ☐ 평가비용 (견적서 금액 기입) ☐ 발명의 평가기관 (택1)			
	기술분야 (택1)	☐ 기계금속건설 ☐ 화학생명공학 ☐ 전기전자정보통신			

STEP2						
담당자 연락처	이름		소속부서 및 직책	기업일 경우 기재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지역(거주지)	개인일 경우 기재		
기업규모	☐ 중기업 ☐ 소기업		설립년도	년	상시 근로자수	명
			자본금			백만원
지식재산권 등록 건수	국내	건	매출액 (최근3개년)	00년도		백만원
	국외	건		00년도		백만원
				00년도		백만원

[첨부파일]

① 지식재산평가 활용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10호]*
② 지식재산권 등록원부 1부(*열람용 제출불가)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주민등록등본(신청일 이후 발급분) 1부
④ 중소기업 확인서 1부
⑤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⑥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⑦ 사업 신청 위임장 1부 *[별지서식 제5호]*

[신청서 입력시 주의사항]

① 등록원부(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특허권자란의 최종권리자란 또는 전용실시권자란을 참조하여 기재
※신청인이 법인대표라도 등록원부의 최종권리자가 개인명의 권리인 경우, 개인자격으로 신청할 것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시 전용실시권자 명의로 신청할 것
② 최종권리자가 개인일 경우 개인 주소, 법인일 경우 법인 주소를 기재
③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시 해당사업 지원취소와 함께, 국고보조금 규정에 따라 환수 및 형사고발 됨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① 신청자는 발명의 평가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평가 상담을 진행 후 사업을 신청하였습니까?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상담 후 신청) **(예 ☐ 아니오 ☐)**
② 신청자는 1차 심사 통과 이후에는 평가기관 변경이 불가합니다.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셨습니까? **(예 ☐ 아니오 ☐)**
③ 기술거래를 희망하는 경우, 협약된 기술거래기관에 귀사의 기본정보 및 지식재산 평가결과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비동의 ☐)**
④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견적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청자 부담 ☐ (확인)**
⑤ 신청자와 신청권리의 최종권리자가 서로 다르거나 사업 절차 도중 신청권리의 권리자가 변경된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확인)**
⑥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시 해당사업 지원취소와 함께 국고보조금 규정에 따라 환수 및 형사고발됨을 안내드립니다. **☐ (확인)**

「발명진흥사업운영요령(특허청고시)」에 의거 상기와 같이 「지식재산평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개인/법인) : (인/서명)
대표자(법인의 경우) : (인/서명)

한국발명진흥회 회장 귀하

작성양식 [별첨 1-2]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 (평가기관 작성)

년 월 일

귀하 (신청기업/신청인)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발급된 견적서만 인정**

o 권리(등록)번호 :

o 발명의 명칭 :

합계금액 (부가세 별도)	**일금 원정(₩) ※합계금액은 만단위 이하 절사하여 기재**		
항 목	**세 항 목**	**평가비용**	
		현금	**현물**
①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소 계	**원**	
②경비	전문가활용비 (외부 전문가 자문비 등)		
	회의비		
	출장비		
	유인물비		
	기술정보수집비 (유료DB 사용료 등)		
	시험평가/분석비 (평가항목 등)		
	재료비 (시약, 재료 등)		
	외주가공비 (시작품제작비 등)		
	소 계	**원**	**원**
③일반관리비=(①+②)x5% 이내		**원**	**원**
④이윤=(①+②+③)x10% 이내		**원**	**원**
합 계 (만단위 이하 절사)		**원**	**원**

[참고사항]

① 인건비는 '해당연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함

② 경비 항목은 '각 평가기관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전문가활용비는 기준이 없는 경우 '해당연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함

③ 일반관리비 등 별도 관련규정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실비기준으로 산출함

④ 상세내역 기입, 내용이 많은 경우는 세항목 관련 총액만 기입하고 내역은 별지로 첨부함

※ 현물은 평가에 필요한 각종 시료, 기자재, 외주가공비 등으로 인건비는 해당되지 않으며, 그 금액(평가비용의 20%이내)을 객관적으로 산정 및 증빙할 수 있는 것에 한함.

※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기입함

※ 평가기관은 관련규정이 개정된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에 통보해야 함

[별지] 인건비 산출내역 1부

(별지) 인건비 산출내역

구 분		직급	1일인건비	참여기간 (영업일수)	참여율	총인건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팀장이상	책임연구원				
	팀원	연구원				
내부인건비 소계						
직접비 (전문가활용비)	공학박사	전문인력				
	회계사	전문인력				
	변리사	전문인력				
외부인건비 소계						
총 합 계						

참 고)

기업체부담금(현금+현물)

작성양식 [별첨 1-3]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한국발명진흥회(이하 "본회")는 지식재산 평가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목적	•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의 **신청내용 확인 및 추가제출서류 안내 등 연락** 및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IP금융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정보 관리** •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관리 및 지원효과 분석** • 귀하의 이메일이나 우편물,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본회 및 소관부처의 정책 사업 안내 및 정보 제공**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지원기업정보 제공**
수집·이용 기관	• 본회 및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제휴기관(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
수집·이용할 항목	•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번호·이메일·팩스번호 등 연락처**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함

1-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목적	•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관리 및 지원효과 분석**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내 지원기업 지원이력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제공 기관	•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 수행기관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및 소관부처
제공할 항목	• 지원기업별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이메일 등 연락처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정보제공 목적 달성시** 지체없이 파기함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 보유 및 이용

※ 정보주체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정보주체는 해당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확인 : *{담 당 자 명}* (인)

2-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목적	•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IP금융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설문조사 및 기업(신용)정보 조회를 통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 지원효과 분석, 지식재산평가 및 금융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분석** • 귀사의 이메일이나 우편물,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본회 및 소관부처의 정책사업 안내 및 정보 제공**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지원기업정보 제공**
수집·이용 기관	• 본회 및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제휴기관(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
수집·이용할 항목	• **기업식별정보** :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등 • **기업신용정보** : 보증·IP담보대출·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신청 후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투자 실행금액 및 일자, 신용등급 변동이력 • **기업과세정보** : 지원기업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 **지식재산평가정보** : 평가기준일, 가치(등급)평가 결과, 평가기관, 평가일, 주요 추정변수(경제적수명, 할인율, 로열티율, 매출액추정 등) 별 투입정보 등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유기간 :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제공된 날) 이후 **10년간** •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함

2-2. 기업(신용)정보의 제공 및 조회에 관한 사항	
목적	• 설문조사를 통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 지원효과 분석** • 신용조회회사 및 금융기관을 통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활용 성과 조사, 지원효과 분석, 지식재산평가·금융 정책 수립을 위한 기업신용정보 및 재무정보 조회**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내 지원기업 지원이력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제공·조회 기관	•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 수행기관 • 신용조회회사 : NICE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터(주) 등 • (해당시) 금융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별 금융기관 - 보증연계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 IP담보대출연계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등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및 소관부처
제공·조회할 항목	• **기업신용정보** : 보증·IP담보대출·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신청 후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투자 실행금액 및 일자, 신용등급변동이력 • **기업 과세·행정·인증정보** : 지원기업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기관에 제공되는 기업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식별정보** :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특허등록번호 등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정보제공 목적 달성시** 지체없이 파기함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 보유 및 이용

※ 정보주체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기업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정보주체는 해당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본사는 위의 목적으로 본사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확인 : *{신 청 기 업 명}* (인)

작성양식 [별첨 1-4]

지식재산 평가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

A(위임자)는(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하는 지식재산 평가지원 사업신청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B(수임자)에게 위임하며, 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의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o 위 임 자(A-1) : (인감)

- 주민(법인)등록번호 :

o 위 임 자(A-2) : (인감)

- 주민(법인)등록번호 :

o 위 임 자(A-3) : (인감)

- 주민(법인)등록번호 :

==========

o 수 임 자(B) : (인감)

- 주민(법인)등록번호 :

<해당 권리>

권리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20 . . .

** 신청권리가 공동권리인 경우에만 제출*
** 위임자와 수임자 인감증명서 필히 첨부*
** A, B가 개인인 경우 성명과 주민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법인번호 기재*
** 별지서식 제7호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